

2019.07.

2019년 세법개정안 - 관세

1.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(관세법 §99, 관세칙 §54)

□ 개정 전

관세법상 ①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②해외에서 제조·가공·수리 또는 사용(사용 등)되지 아니하고 ③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 면제 가능(재수입면제). 예외적으로 '박람회·전시회에 출품하는 물품'이나 '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된 물품'의 경우 ②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외에서 사용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 면제

□ 개정내용

위 ②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외에서 사용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감면대상 확대(수출물품의 설치·조립 장비, 수출물품의 상태 측정기기,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한 일시 반출 운동관련 물품, 수입물품 적재용기 등)

□ 개정의 효과

수출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로 수출입기업의 관세부담 경감이 예상되며,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국제 경기 대회 참가용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감면규정이 없어 여행자 휴대품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관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 해소 예정

□ 적용시기

2020. 1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.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§9)

□ 개정 전

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
터 1년 이내에만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가능

□ 개정내용

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'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' 사후신청 가능

□ 개정의 효과

납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입신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
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금번 관세법 개정으로 구제가 가능하
게 되었음

다만,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, 한·아세안 FTA와 같이
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기관발급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유의해야 함

□ 적용시기

2020. 4. 1.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

CONTACT



김연중 관세사

02-528-5018

younjong@yulchon.com



권문현 관세사

02-528-5303

mhkwon@yulchon.com



**INNOVATIVE
LAWYERS2018**
ASIA-PACIFIC WINNER



NATIONAL FIRM OF THE YEAR
SOUTH KOREA
CHAMBERS ASIA-PACIFIC AWARDS

Yulchon LLC

Korea | Vietnam | China | Myanmar | Russia | Indonesia*

*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& Partners

[구독신청](#) | [율촌 간행물 더 보기](#) | [Contact Us](#)

법무법인(유)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(유)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